

민주주의와 평화

사진가 이시우

목 차

들어가는 글

(1) 민주주의

- 1) 제도
- 2) 권리
- 3) 권력
- 4) 주체
 - 1 자기결정권
 - 2 조직력
 - 3 권리지배
 - ㄱ 권력배제
 - ㄴ 권리지배의 권력화
 - ㄷ 권리의 소멸

(2) 평화

- 1) 국제체계
- 2) 유엔의 한계
- 3) 유엔체계와 미국패권의 균열
 - 1 중국핵과 유엔총회
 - 2 핵과 자위권
 - 3 핵보유국과 안보리체계의 균열
 - 4 미국우선주의
 - 5 사회주의중국의 굴기
 - 6 초국가기구

나가는 글

들어가는 글

나는 이 글에서 민주주의를 국내문제로, 평화를 국제문제로 전제하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민주주의는 저항으로서의 민주주의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로 구분한다. 저항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주체를 억압하는 과정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같은 형식적 구분은 논의의 전개를 위한 것일 뿐 결론은 아니다. 권리분석을 출발점으로 권리에 의한 지배가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 국내 민주주의와 국제평화가 통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본다.

(1) 민주주의

1) 제도

제도(制度)¹⁾는 칼로 베거나 잘라 척도를 만든다는 뜻이다. 척도는 곧 비례이다. 베거나 자른다는 점에서 제도는 배제를 전제한다. 따라서 배제된 자²⁾들은 제도를 완전하게 하는 것을 방해

1) 制는 未+刀로 未는 나무가 겹쳐 있는 모습이다. 나무를 칼로 잘라 맞춘다는 의미이다. 『한한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7), p.292

하는 균열이자 위협이다. 척도와 비례가 작동하는 제도안에 포함된 자들에겐 평등이 보장된다. 비례에 의한 분배가 곧 평등이다. 빵은 5개인데 분배해줄 사람은 10명일 때 이를 평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선 1/2 : 1의 간단한 계산이면 되지만 빵은 9개인데 사람은 10명일 때 9/10 : 1의 복잡한 계산이 요구된다. 그러나 계산을 포기하면 빵이 5개일 때보다 9개일 때가 더 풍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심화된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불평등은 이중잣대, 즉 차별적인 척도와 비례가 작동하는 상황이지 척도없는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도 체화되면 제도이다. '계산'은 달리 말하면 '등가교환'이다. 근대제도의 구성원리 중 하나인 '계산'³⁾은 제도구성의 불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나는 계산의 특징을 네가지로 파악한다.

첫째, 차이를 동일로 만든다. $1+1=2$ 라는 계산에서 1과 2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계산을 통해 동일해진다. 등가는 차이의 반대가 아니다. 어떤 차이의 체계도 그 자체를 완전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등가가 출현하는 것이며 이는 이러한 불완전성의 구조적 효과에 다름 아니다.⁴⁾ 둘째, 대립을 통일시킨다. $1+1=2$ 에서 후항인 2는 하나뿐이므로 유한하다. 그러나 전항은 $1+1, 2+0, 3-1, 4-2, 5-3\cdots$ 으로 무한하다. 유한과 무한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유한과 무한은 상호대립물인데 대립물이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 무한과 유한은 양은 물론 질도 다르다. 전항과 후항이 서로 대립하는 극단인데 = 를 매개로 상호이행, 상호교환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의 틀 안에 있기에 $1+1$ 과 2가 서로 극단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상호작용은 곧 상호계약이며 내적·필연적 연관이다.⁵⁾ 차이가 상호 무관심한 것이라면 대립은 동일성과 차이성의 통일이란 점에서 다르다. 대립은 동일성 가운데의 차이이기에 서로 제약하면서 배척한다.

셋째, 동일을 차이로 만든다. 이는 첫 번째 특징과 모순된다. 두 번째 특징이었던 무한=유한에서 좌항의 무한사례 중 단 하나의 예외가 문제로 떠오른다. $2+0=2$ 이다. $2=2$ 는 계산이 필요없는 동어반복이다. 같은 것끼리는 교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른 것과의 교환이 계산이었다. 그리고 계산은 대립물조차 통일시킨다는 것이 앞에서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전 같은 것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계산이 되었다. 계산이 아니라면 드러나지 않았을 관계이다. 계산관계에 2가 들어왔기 때문에 0이 요청된 것이다. $1+1=2, 3-1=2\cdots$ 등이 외적관계라면 $2+0=2$ 는 내적관계이다. $2=2+0+0+0+0+0\cdots$ 이라면 의미는 같으나 존재는 다르다. 0은 의미체계에서 보면 무의미한 숫자이다. 그러나 무의미한 채로도 존재한다. 좌항은 우항을 통해 표현된다. 2가 기표라면 $2+0$ 은 기표+무, 기표+빈공간이다. 우항은 잉여상태이고 그에 비해 좌항은 결핍상태이다. 이처럼 존재가 기표와 만날 때 기표는 항상 결핍되어 있다. 차이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등가교환이 등장하지만 등가교환 역시 결핍을 채우지 못함으로써 온전한 질서를 구성하는데 실패

2) '몹 없는 자들'(part of no-part/sans-part)은 지젝과 랑시에르 등이 사용하는 개념이다. 아감벤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자(호모 사케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그린비, 2009), p.14; Jacques RANCIÈRE, *Aux bords du politique*, (Paris: La Fabrique, 1998)/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서울: 길, 2008), p.243; Giorgio Agamben, *Homo sacer*, (Giulio-Einaudi, 1995)/조르주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서울: 새물결, 2008), p.156

3) 이는 베버의 '계산적 합리성'개념에서 가져왔다. Max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박정수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6, 2판), pp.50-57참조

4) 슬라보예 지젝, 김서영 역, 『시차적 관점』, (서울: 마티, 2009), p.77

5) 헤겔에게서 모순은 동일성과 차이성의 통일이다. 맑스는 '동일성'의 신비성을 비판하며 '상호계약'개념을 도입한다. "상대적 가치형태와 등가형태는 상호의존하고 상호계약하는 불가분의 요인들이지만, 그와 동시에 상호배제하는 또는 상호대립하는 극단들 -즉 가치표현의 두 극- 이다."(칼 마르크스, 김수행 역, 『자본론』1(상), (서울, 비봉, 1999 개역11쇄), p.61)

한다. 기표가 의미, 질서, 제도라면 무와 빈공간은 주체이다. 주체는 기표를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주체와 기표는 일치하지 않는다. 의미체계, 상징체계, 질서, 제도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것이 주체이다. 계산은 등가교환을 통해 차이를 동일로 만들지만 반대로 동일을 차이로 만든다. 모순이다.

넷째, 계산은 기적을 만든다. 관성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차이가 동일해지고 대립물이 통일된다. 또한 빈틈없는 통일을 이루고 있는 듯한 체계의 모순을 드러낸다. 이같은 균열이 체계를 전복시킨다. 주체가 발견되고 발현될 때 전혀 다른 발전으로의 대체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기적이다. 근대의 기적은 상식을 넘는 비약적 변화인 발전의 이름으로 도래한다. 근대는 기적이, 발전이 일상이 된 세기이다.

‘계산’의 특징이 근대만의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그러나 ‘계산적 합리성’이 근대적인 것은 교환을 목적으로 한 상품생산이 전면화된 자본주의를 물질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권리도 교환대상이 되며, 개념도 교환대상이 된다. 권리의 교환도 비례와 척도가 적용되며 제도가 된다. 권리의 교환체계는 권력을 창출하며, 국가차원에서는 주권으로, 국제차원에서는 패권으로 제도화된다. 개념도 국가차원에서는 민족과 국가이념으로, 국제차원에서는 인류와 세계정신으로 제도화된다.

2) 권리

권리權利의 권權은 나뭇가지에 새가 날아와 앉아 출렁이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 예기와 한서에 의하면 저울추를 의미하는데 추의 당김에서 근거한다.⁶⁾ 저울의 눈금이 기호인데 비해 추는 존재간의 관계이다. 김시습의 ‘갈고리의 뜻을 알아차리고, 눈금의 표식을 인정하지 말라’⁷⁾는 말이 이에 어울린다. 권은 나와 나 아닌 것이 상호작용하며 균형과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나의 권리는 남이 나를 인정해주어야 권리가 된다. 즉 권리의 상호작용은 인정관계의 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정관계란 교환관계의 반영이다. 등가교환의 틀에서 보면 권리는 질만이 아니라 양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교환을 위해서는 권리가 실제 교환될 수 있는 사물이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권리의 대상화·사물화이다. 대상화된 권리는 표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기표된 투표용지이다. 기표(記票)를 통해 주체는 기표(記表)로 전환된다. 표현될 수 없는 주체는 표에 기입함으로써 권리행사와 동시에 소외된다. 소외된 권리가 기표이다.

근대정치에서 상품의 교환에 해당하는 관계는 개인 간의 ‘동의’이다. 모든 정당한 권위는 그 권위가 행사될 대상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원칙 - 다른 말로 하면 개개인은 그들이 동의했던 바에 의해서만 의무를 갖는다는 원칙 - 아래에서 근대의 세 혁명은 이루어졌다. 시민사회가 성립되기 이전 권력은 약탈이나 증여등의 형식으로 획득되었다. 사적소유와 상품교환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탄생은 권리의 탄생도 동반했으므로 약탈은 더 이상 권력획득의 수단이 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동의’에 기초한 자기 권리의 위임이다. 근대국가의 대의 제도는 ‘동의’를 기반으로 추첨제에서 선거제로 발전된다. 추첨에 기초한 체계에서는 사람들이 추첨을 사용하기로 한 때 합의를 했더라도 선출된 사람은 그가 권위를 행사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의지를 통해 권좌에 앉은 것이 아니다. 반면 선거체제에서는 시민의 동의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사람들은 선출방법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결과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

6) 『한한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7), p.1061

7) ‘領取鉤頭意 莫認定盤星’ (김시습, 『화엄일승법계도주병서』(1562), 동국대도서관소장)

이다. 만약 동의에 기반한 권력과 정치적 구속력을 세우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분명히 선거는 주춤보다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이다. 정치적 정당성과 구속의 근거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 주춤의 몰락과 선거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⁸⁾ 따라서 선거제의 핵심은 대의제가 아니라 지배에의 자발적 복종에 있다. 동의란 자기권리의 포기과 공동권력에의 구속, 복종을 의미한다. 자발적동의란 자발적복종의 다른 이름이다. 동의하는 순간 자기결정을 지배하기는커녕 지배당하는 소외가 발생한다.⁹⁾ 주체가 기표로 대체되고, 주체의 결단이 제도예의 욕망으로 대체되는 것이 소외이다. 권력의 수단은 강제와 동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동의가 내면화된 강제라는 점에서 권력의 본질은 오직 강제이다. 즉 동의 자체가 권리의 소외됨, 즉, 소외된 권리이다. 투표하는 순간만 시민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주권자이고, 투표가 끝나는 순간 주권자는 그 투표에 의해 소외된다. 임금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잉여가치를 소유하게 해주고, 자신은 소유를 상실하듯이, 선거의 결과 민중은 지배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이양하고 자신은 권리를 상실한다. 정치에서 소외된 관계로서의 권리는 표로서 사물화 된다. 화폐와 투표는 권력의 척도란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선거에서 불법인 대표행위가 발생하는 것도 이와 연관된다. 물물교환에서 화폐교환으로의 이행이 상품교환을 우연적인 것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었듯이 주춤제에서 선거제로의 이행도 권력이양을 우연적인 것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권리는 이제 양으로, 숫자로도 전환된다. 투표는 권리의 집중을 지향한다. 결선투표 등은 집요한 권리이양장치이며 자발적 동의와 자발적 복종을 강제하는 장치이다. 이 양을 통해 집중된 권리는 축적을 이루고 이는 권력이 된다.

3) 권력

권력이 일시적, 우연적 권리의 집중이 아니라 필연적 제약과 배제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물질적 대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것이 법이다. 법은 기표이다. 권력이 제도의 밖에서 작동할 수 있다면 법은 제도의 경계 안에서 작동한다. 국가차원에서의 권력의 척도는 법이다. 소외된 권리로서의 국가권력은 법으로서 대상화·사물화 된다. 척도란 질이면서 양이다. 질은 규정이고 규정은 한계이다. 따라서 법은 권력을 규정하며, 그 규정은 곧 한계를 의미한다. 즉 법은 권력의 표현이면서 권력의 한계이다. 또한 법은 권력의 양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형량으로 계량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계산이 그러하듯이 권력과 법의 상호관계도 어긋남이 존재한다. 이 어긋남이 합법권력의 균열선이다. 법의 예외상태, 즉 법밖에서의 권력은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법 밖에 있다. 칼 슈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권자는 법밖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법안에 있는 자로서, 즉 헌법을 완전히 효력정지 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Entscheiden)하는 자리에 있는 자이다.” 헌법 밖에 있는 ‘예외상태’는 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 오직 국가권력의 담당자, 즉 주권자만이 예외상태를 결정함으로써 법의 경계를 규정한다.¹⁰⁾ 이같은 법 밖의 권력은 개별권리주체가 공동권력으

8) Bernard Manin,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버나드 마닝, 광준혁 역, 『선거는 민주적인가-현대대의민주주의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 후마니타스, 2004), p.113참조

9) 소외된 권력관계는 권력의식을 만들고, 그런 권력의식이 진리나 법칙으로서 사람들에게 강요된다. “예를 들어 왕권과 귀족 및 부르주아가 서로 지배권을 둘러싸고 다투고 있고 그리하여 지배권이 나뉘어져 있는 시대나 국가에서는 이른바 권력분립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인 사상으로 등장하여 ‘영원한 법칙’으로서 표명될 것이다.”(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박재희 역, 『독일이데올로기』1, (서울: 청년사, 1988), p.83)

10) Carl Schmitt, *Politische Theologie: Vier Kapitel zur Lehre von der Souveränität* 2판,

로 동의한 적이 없는 잉여권력, 초과권력이다. 예를 들어 사형집행권이란 시민국가 안에서는 최고 권력이지만, “사면권”이라는 주권자의 초법적인 권력 앞에서는 무력해진다.¹¹⁾ 주권자는 법 밖에서 권력행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다시 법을 통해 합법화시킨다. 법으로 합법화되지 않으면 주권자는 헌법위반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은 법보다 한발 앞서 나감으로써 법 밖에 선다. 잉여권력은 법을 통해 재생산·축적된다. 이는 [권력¹-법-권력²]로 도식화할 수 있다. 권력을 중간매개로 한 [법¹-권력-법²]의 순환은 법을 강화시키는 회로이고, 법을 매개로 한 [권력¹-법-권력²]의 순환은 권력을 강화시키는 회로이다. 법이 강화되는 순환회로에서 축적되는 것은 제도인데 비해, 권력이 강화되는 순환회로에서 축적되는 것은 주권자의 권력이다. 전자는 법치(法治), 후자는 인치(人治)가 된다.

다음단계에서 권력은 더 이상 법을 통하지 않고 권력 스스로 권력을 생산한다. 지금까지 법은 권력의 표현이었지만 이제 권력은 더 이상 법이란 매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권력은 법의 경계를 정해 법이 침범할 수 없는, 권력이 한 없이 자유로운 지상천국을 만든다. 통치자금, 통치행위의 이름으로 법이 침범하지 못하는 영역이 만들어진다. 법을 초월한 국가권력은 [권력¹- 권력²]의 순환을 갖는다.¹²⁾ 애초 인민이 위임했던 권리는 이 단계에서는 소외된 흔적조차 찾아볼 수도 없게 되고 물신화된다. 권력물신성이 출현한다. 권력은 법과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권력을 자체 생산한다.

4) 주체

빈틈없을 것 같은 교환체계의 계산, 비례, 척도,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균열점에서 주체가 출현한다.¹³⁾ 가장 합리적일 것 같은 계산은 모순위에 서 있다. 계산의 토대위에 서 있는 제도 역시 모순을 드러낸다. 제도의 성립은 배제를 전제하며 배제된 자들은 포함된 자들을 완전하지 못한 자로 만드는 타자로 드러난다. 그러나 더 깊이 관찰해보면 배제된 자들이 있기에 제도가 지탱된다. 따라서 배제된 자들은 제도의 밖에 있는 한 요소가 아니라 제도를 가능케 하는 토대이자 근거이다. 그러나 제도의 밖에 있는 것이 사회의 밖, 즉 자연에 있다는 의미는

(Berlin: Duncker & Humblot, 1934)/김항 역, 『정치신학: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서울: 그린비, 2010), pp.18,22,25,16참조

11) 『법철학』에서는 시민사회에서 국가로의 이행이 ‘직업단체’(Korporation)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에나의 실재철학』에서의 이행은 바로 이 ‘사면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사면권은 국가원수에게만 귀속되는 고유한 권한이다. 따라서 이 권한은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기능하는 민법적, 형사법적 사법제도의 영역을 초월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Igor Primoratz, *Banquos Geist: Hegels Theorie der Strafe*, in Hegel Studien. Beiheft 29.(Bonn. 1986), p.61: 장명학, 「헤겔의 변증법적 권력개념」, 『철학사상』12, (서울대철학사상연구소, 2001.6), p.294인용

12) 이는 마치 생산과정을 매개로 축적되는 생산자본 [자본¹-생산-자본²]이, 생산의 매개없이 이자를 낳는 자본, 돈이 돈을 낳는 자본 [자본¹-자본²]으로 발전하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국가의 법은 권력과의 관계에서 4가지 계기를 통해 속성이 전환되며 국가권력을 완성한다. 첫 번째, 법은 권력의 척도, 권력의 저울이다. 두 번째 법은 권력의 척도라는 속성으로부터 수많은 권력을 매개하는 수단, 즉 지배수단으로 발전한다. 이는 마치 권력을 유통하는 시장과 같다. 세 번째, 법의 순환체계 밖에 있던 권력이 법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법은 권력을 생산, 축적하는 공장으로 발전한다. 네 번째, 권력은 법을 더 이상 매개하지 않고도 법을 초월하여 스스로를 재생산하며 독립한다. 이로써 권력으로서의 권력을 만들어내는 권력의 은행이 된다. 이 단계에서 국가로서의 국가가 완성된다.(앞의 논의는 줄져, 「국가와 항쟁」, 『국가란 무엇인가? 심포지엄자료집』, (복합문화공간에무, 2017.5.25)에서 재인용하였다.)

13) 주체는 균열, 틈새로서의 실재와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틈새로서의 실재가 주체의 자유로운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체는 실재와 동근원적이다. (나종석, 「슬라보예 지젝의 헤겔 변증법 해석에 대한 비판-구체적보편성과 급진민주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27집, (2014), p.21)

아니다. 같은 사회에 살면서 제도에서 배제되었기에 포함된 자와 배제된 자는 서로 무시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대립관계에 놓인다. 같은 사회 안에 살면서도 투명인간으로, 유명으로, 좀비로 취급받는 자들의 자각은 대립관계를 초래하고, 여기서 주체의 출현이 목격된다. 주역 계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성인의 가장 큰 보물은 자리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은 어짊이다.

聖人之大寶 曰位, 何以守位 曰仁.¹⁴⁾

성인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이다. 하늘의 소리는 곧 민심의 소리이다. 이는 언어와 의미로 표현되거나 기표가 되지 않는다. 민심은 아무리 정교한 여론조사를 동원해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민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 자가 성인이다. 주체의 소리, 주체의 부름(address)을 듣는 자이다. 성인이 서있는 자리는 주체가 출현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큰 보물은 자리이다. 의미, 질서, 제도, 체계의 정점인 왕궁에 마련된 자리는 욕망의 자리이다. 욕망은 주체에 대한 사랑을 억압,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왕좌를 지키기 위한 수단은 욕망의 윤리이다. 만인지상 일인지하(萬人之上一人之下)나, 신하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위극인신(位極人臣)은 왕의 자리에 한없이 가까워질 순 있지만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순 없다는 욕망의 윤리가 전제되어 있다. 이는 지배를 내면화시키는 환상이자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윤리를 뜻하는 Ethics는 ethos를 어원으로 하는데 에토스가 바로 '자리'이다. 윤리는 인격, 교양 같은 기표로 자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선 자리에 자기도 같이 서는 것이다. 그 주체는 제도에 의해 배제된 자이다. 배제된 자의 곁에 서는 것은 결단이고 결단은 사랑이다. 사랑의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욕망으로 치장한다. 인격, 자질, 능력은 기표이다. 주체는 총동이며 결단이다. 주체의 자리에 서기위해,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표가 요청될 뿐이다. 어질고 지혜로운 자가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부름에 응답¹⁵⁾하기로 결단하는 자가 성인이다. 제도의 작동이 멈추고 주체가 출현하는 순간이 혁명이다. 주체는 혁명의 순간에 두가지 선택 앞에 놓인다. 하나는 자유주의의 길이며, 또 하나는 진보주의의 길이다.

자유주의정치의 귀감이 된 것은 파쿠비우스이다. 알프스산맥을 넘은 한니발부대의 공격에 직면한 도시 카푸아에서는 항쟁이 일어났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방비도 하지 못한 원로원 귀족들을 처단하라는 요구가 들끓었다. 파멸적위기를 직감한 군주 파쿠비우스는 노련한 정치적지략을 발휘한다. 우선 원로원귀족들을 찾아가 당신들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으니 모든 것을 나에게 위임하라고 한다. 원로원은 그의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엔 화난 군중들 앞으로 나아가 당신들이 원한다면 귀족들을 모조리 처형하겠다. 대신 국정공백이 있으면 안되니 당신들 중에 귀족들을 대신할 지도자들을 뽑아달라고 한다. 원로원 처단에는 한 목소리였던 민중들은 막상 지도자를 뽑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자 누구는 이래서 안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된다고 하며 분열되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다. 분열과 혼란이 극에 달할 때쯤 파쿠비우스가 나서 중재안을 냈다. 여러분이 당장 지도자를 뽑지 못하니 우선 기존의 원로원을 유지하며 위기를 수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민중들은 달리 방법이 없었으므로

14) 周易 繫辭傳 下

15) 지젝은 주체를 라캉을 인용하여 '실재의 응답'으로 표현한다.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송고한 대상』, 이수련 역, (인간사랑, 2002), p.292

파쿠비우스를 따랐다. 마키아벨리가 『로마사강의』에 소개한 일화이다.¹⁶⁾

준비되지 않은 군중을 통치하는 방법으로, 파멸적 위기를 조화의 기회로 승화시키는 정치의 기술로, 마키아벨리는 파쿠비우스테제를 제시했다. 이는 민중을 지배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 지배엘리트층을 위한 테제이다. 파쿠비우스테제는 민중의 준비 안 된 상태를 전제한다. 그러나 전제한다는 것은 민중이 영원히 준비될 수 없는 상태를 목표로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지프스를 만드는 것이다. 파쿠비우스주의자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민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잘 알겠으나 여러분은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 달라.’

이것을 뒤집은 진보주의정치의 귀감은 레닌테제이다. 1917년 2월 러시아혁명이 일어났을 때 파쿠비우스테제의 망령이 다시 살아났다. 혁명을 일으킨 노동자민중들이 의회가 있는 타브리 다궁으로 몰려가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청원한 것이다. 그 결과 민중이 아닌 의회 권력에 의해 임시정부가 꾸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6월까지 지속되었다. 6월초 정국수습을 위해 처음 열린 전러시아소비에트대회에서 임시정부의 지도자는 “현재 러시아에 권력을 넘겨받아 ‘우리가 당신들을 대신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이 과연 있는가”라고 다그치듯 물었다. 조용해진 대회장 한가운데서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 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도 모든 권력을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다.”¹⁷⁾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레닌이었다. 당시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당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리고 혁명 후 전시공산주의의 실패과정을 떠올리면 완벽한 집권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러시아혁명은 성공했고, 역사상 최초로 지배를 받기만 하던 민중이 지배세력이 되었다. 레닌은 민중의 주체성의 본질이 준비와 경륜보다 결단에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¹⁸⁾

마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개인들 간의 협업자체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¹⁹⁾ 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교환관계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 개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역사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진행된 본원적축적의 결과,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평등한 상태를 이미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은 소외된 힘을 만들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본주의국가는 부분적인 수술이나 개조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유기체이다. 국가권력을 창출한 주권의 주인이자 제한권력인 주권인민은 자유의지에 기초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 정체성을 재 정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유의지에 의한 인간관계는 소외가 아닌 단결로 나타난다. 그러나 진정한 단결은 의지만이 아니라 높은 생산력의 발전을 요구한다. 주권인민의 정체성은 물질적 힘을 인간의 지배아래 굴복시키지 않고는 소외된 권리, 권력의 노예가 되는 길을 피할 수 없다.

노동분업을 통한 인격적 힘(관계)의 물질적 힘으로의 전환은 그 전환에 관한 일반적 관념을 머릿속에서 몰아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각 사람들이 이들 물질적 힘을 다시금 자신들 아래 굴복시키고 그 노동분업을 폐지함에 의해서만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공동체내에서만 비로소 인격적 자유는 가능해진다. 이 공동체를 대신했던 지금까지의 국가 따위에 있어서는 지배계급과의 관

16) Machiaveli, *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i Tito Livio*, (1571)/황문수 역, 『정략론』, (서울: 학원출판공사, 1983), pp.306-309참조

17) 이재화 편, 『레닌Ⅱ』, (서울: 백산서당, 1986), p.39

18) 이시우, 「항쟁의 선택, 파쿠비우스냐, 레닌이냐」, (민중의 소리, 2016.11.9.)재인용:
<http://vop.co.kr/A00001086695.html>

19)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박재희 역, 『독일이데올로기』1, (서울: 청년사, 1988), p.64

계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그들이 이 계급에 속한 사람들일 경우에만 인격적 자유가 존재했었다...때문에 그것은 피지배계급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환상적인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족쇄였다. 참된 현실적인 공동체 속에서 각 사람들은 그들의 결사 속에서 그 결사를 통해서만이 자신의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²⁰⁾

‘이게 월급이냐’, ‘이게 회사냐’, ‘이게 학교냐’ 라는 국지적인 질문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의 행동은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답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에게 핵심은 자유의지를 가능케 할 물질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권의 교체가 아닌 국가권력자체에 대한 교체가 필연임을 밝힌다. 마르크스의 『프랑스 내전』에서 등장한 국가파괴테제가 그것이다. 김영수는 낡은 국가기구를 파괴한다는 것은 국가장치의 완전한 파괴 및 대체를 의미하기보다 인민의 권리를 권력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국가권력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다. 새로운 관료와 관료기구, 새로운 군인과 군대구조, 새로운 통치인력과 통치구조 등이 인민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재구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낡은 국가기구를 파괴시키고, 나아가 국가를 소멸시켜 나가는 디딤돌인 것이다. 이는 국가권력의 모든 힘이 인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인민과 함께 작동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²¹⁾

이는 제한권력을 수립하고자 했던 주권인민들 앞에 항상 던져지는 고민이다. 낡은 국가권력의 지배에 거부하지만 새로운 공동체는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따라서 항쟁은 물신화된 국가권력의 허상을 깨고 개인들의 권리관계에 입각한 체계를 건설하는 시작이다. 또한 항쟁은 소외된 권리, 즉 권력중심이 아닌 자유의지에 입각한 권리중심의 관계를 수립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²²⁾

이는 항쟁이 끝난 뒤가 아니라 항쟁의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항쟁은 장기적이지 않고 단기적이며, 점진적이지 아니라 급진적이며, 소멸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항쟁권력은 첫 번째, 자유의지, 즉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소외가 아닌 단결은 조직력의 형태로 등장한다. 조직력은 질이자 양이다. 세 번째 조직력은 힘이므로 힘은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현되며, 대상에 대한 지배력으로 나타난다. 이는 공간에 대한 지배와 시간에 대한 지배를 요청한다. 항쟁주체의 지배력은 권력에 대한 권리의 지배력이다. 권리는 권력을 배제하거나 권리를 권력화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를 소멸시키는 조건을 마련한다. 마침내 자본주의의 유산인 권리는 국가의 소멸과 함께 현저히 약화된다. 그리고 권리지배의 완성과 함께 권리도 소멸한다.²³⁾

1. 자기결정권

20)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박재희 역, 『독일이데올로기』1, (서울: 청년사, 1988), p.109-110

21) 김영수, 「권리와 권력의 융합 메카니즘과 국가사멸의 시원성」,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봄 학술대회 자료집』, p.120

22) 권력은 권리를 배제하거나 대상화하는 힘을 발휘하면서 인민보다 우위에 위치하였다. 물론 인민은 권력의 힘에 대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복종의지를 전제로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유지하지만,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전복된 경우에는 권력의 힘을 자신의 권리로 끌어들이는다.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맺는 형식과 내용이 ‘권력 중심의 관계’에서 ‘권리 중심의 관계’로 전이된다. (김영수, 「권리와 권력의 융합 메카니즘과 국가사멸의 시원성」,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봄 학술대회 자료집』, p.119)

23) 권리의 발생과 소멸이란 관점은 권리가 역사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가치관계가 자본주의의 산물이듯, 권리역시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자본주의의 소멸과 함께 자본주의의 물질토대에 기반한 권리 역시 소멸한다.

항쟁은 소외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소외된 권리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소외된 권리가 토대로 하고 있는 물적조건은 변한 것이 없으므로 소외된 권리를 완전히 극복한 새로운 권리도 아니다. 권리의 여러 속성-소유권, 인권-중 항쟁에서 부각되는 권리는 결정권이다. 결단을 하면서 항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쟁이 지속되는 동안 권리는 국지적, 일시적으로 소외를 거부한 권리, 자유의지와 그에 기반한 권리가 된다. 소외된 권리는 복잡성과 은폐성을 띄지만 자유의지로서의 권리는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항쟁은 질적측면에서 보면 '주체'의 생성과 발전문제이다. 주체성의 척도, 민중권력의 척도는 자기결정권이다. 토론보다 결정이며, 준비보다 결정이다. 토론은 전원참여, 전원발언, 전원실천의 3원칙이 지켜져야 한다.²⁴⁾ 위기의 순간에 '토론만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행합일(知行合一)은 인식과 실천사이의 간격이 발생한다. 그러나 단행합일(斷行合一), 즉 결단과 실천사이엔 간격이 없거나 작다. 수동적 동의, 소외된 동의보다 더 수준 높은 것이 자기결단이다. 항쟁기는 소외된 권리와 자유의지로서의 권리가, 권력과 자기결정권이 투쟁하는 시기이다.

2. 조직력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들의 관계는 소외가 아닌 단결을 이룬다. 단결은 조직으로, 조직의 본질적 관계는 힘으로 발현된다. 발현된 힘은 조직력으로 드러난다. 조직력은 질이자 양이다. 권리주체들의 단결의 척도가 자기결정권이라면 조직력은 이 척도에 양이 더해진 것이다. 항쟁조직의 양은 상대인 공권력과 비례관계로 결정된다. 공권력을 이루는 두 축은 군대와 경찰이다. 2016년 촛불혁명 당시 한국경찰은 11만이지만 이중 시위에 대응하는 경찰력은 의경포함 3만이었다. 연좌시위 해산에 2명, 폭력시위 해산에 5명의 경찰이 소요된다. 따라서 시위대가 1만 5천을 넘으면 공권력으로는 양적한계가 시작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은 질을 고양시킨다. 강도 높은 진압훈련과 군대의 무기에 해당하는 진압장비를 도입한다. 질적으로 강화된 경찰력은 수적열세를 만회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예화 되더라도 10만명 이상, 100만명이 되면 경찰력은 한계에 이른다. 계엄으로 군대가 동원되기 전까지 항쟁주체의 조직력은 양적측면에서 권력을 배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항쟁의 단계에서 비폭력이나 폭력이라는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항쟁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근거는 형식이다. 항쟁의 형식이 문제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형식은 내용 없는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의 구조이다. 폭력이든 비폭력이든 고착된 인식이 여론을 분열시킨다. 문제는 조직력이다. 조직력이야말로 대립하는듯한 폭력과 비폭력의 근거이자 토대이다. 조직화된 비폭력은 폭력보다 강하며, 조직화된 폭력은 비폭력보다 평화적이다. 조직화된 비폭력이 즉흥적 폭력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우리는 촛불항쟁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아무리 조직화된 비폭력이라도 공권력이 굴복하지 않는 한 한계에 도달한다. 그에 대한 답이 폭력이라면 맞다. 그러나 수세적 폭력은 발전이 아닌 퇴보이다. 조직화된 폭력만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폭력이 비폭력보다 평화적이란 역설이 성립하는 것이다. 조직화된 폭력으로서의 발전은 점진이 아니라 비약이다. 점진은 자연발생적이다. 그러나 비약은 과학적이다. 항쟁의 과학은 바로 이 비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소외된 권리는 피지배를 초래했지만 단결된 권리는 지배를 실현시킨다. 단결된 권리는 아직 권리체계를 건설할 조건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지배권력

24) 권리중심관계를 권력구조에 반영하고자 했던 시도로 만델라를 들 수 있는데 만델라 리더십의 특성은 "하의상달, 상의하달, 토론 의무화, 만장일치 가결이었다." (Karl Von Holdt, *Transition From Below*, (Pitermaritzburg: University of Natal Press, 2003), pp.3-10)

의 포위 하에 있기 때문이다. 단결된 권리는 단결된 지배력으로 나타나며, 지배력 역시 권력인 점에선 동일하다. 지배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 조직력은 지배권력을 대상으로 맞설 때 지배력으로 타나난다. 지배권력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가 조직력의 발전 단계를 결정한다.

‘Order’는 ‘요청’, ‘명령’, ‘질서’등 여러 의미를 가진 말이다. 이 말을 힘, 즉 지배력의 발전 단계에 따라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요청’은 기존의 법질서의 틀에서 위임된 권력에게 소극적 힘을 행사하는 단계이다. ‘명령’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위임된 권력자로부터 권력을 환수하는 적극적 지배를 행사하는 단계이다. ‘질서’는 권력의 환수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권력이 요구하는 체제를 내면화시키는 단계이다. 질서란 외형적인 강제가 없이도 권력이 행사되는 내면화된 권력이다. 이를 ORDER1(요청), ORDER2(명령), ORDER3(질서)라고 명명하자. 나는 항쟁을 정권교체로, 혁명을 질서교체로 구분하고자 한다. 따라서 2단계인 ‘명령’이 항쟁, 3단계인 ‘질서’가 혁명이다.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듦으로서 항쟁은 혁명으로 이행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민중총궐기는 1년간 ORDER1(요청)단계였다. 그러나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6년 11월 12일 정오까지 박근혜하야를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함으로써 ORDER2(명령)단계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후 ‘국민의 명령’이란 개념이 순식간에 퍼졌고, 누구도 낮설어하지 않는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이로서 항쟁주체는 ‘요청자’에서 ‘명령자’로 지위가 바뀌었다. 2단계의 과제는 낡은 법질서의 집행자인 공권력을 강제·지배하는 것이다. 이로서 자기결정권으로 단결한 항쟁조직은 명령자의 지위에 맞는 지배력을 갖춰야 하는 단계에 돌입한다.

3. 권리지배 (권리에 의한 지배)

ㄱ. 권력배제

권리지배는 우선 권력배제를 의미한다. 5.18광주에선 항쟁기간 시민들의 자치기구가 꾸려졌다. 프랑스혁명 당시에도 파리 코뮌이 수립되었다. 이들은 공권력을 배제하면서 평등을 지향하는 권리에 입각하여 수립된 질서였다. 항쟁주체의 조직력은 권력주체들에 대한 지배력으로 표현된다. 항쟁의 성공여부는 권력중심의 관계에서 권리중심의 관계로, 권력의 지배에서 권리의 지배로 얼마나 이행했는가에 달려 있다. 권리의 지배란 소수 권력자에 대한 다수인민의 지배이다. 압도적 다수에 의한 권리의 지배는 권력에 대한 평화적 강제까지 가능케 할 수 있다. 이 또한 촛불항쟁에서 체득한 교훈이다. 프랑스 내전기간동안 권리의 지배가 가능했던 것은 권력을 배제할 수 있는 공간의 지배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을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소진되자 권리의 지배도 실패했다. 권력과의 생사를 건 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권리는 관념적으로 현실에서 물러나 이상향을 건설할 수 없다. 국가권력의 폐지를 위한 조건에 대한 고려도 없이 즉각적 국가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권력지배를 최대한 차단, 무력화시키고 권리의 주체들을 보호하며 권리지배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권리지배의 권력화라는 고민이 대두된다.

ㄴ. 권리지배의 권력화

권력을 배제할 수 있어야 권력과 경쟁할 수도 있다. 권력과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은 권리와 권력이 상호 의존하는 상황이다. 권리지배가 일거에 달성되지 않는 한 권력과 공존은 불가피하다. 이는 지배권력과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항쟁 주체내에서도 권리지배와 권력지배의 공존과 경쟁이 모색된다. 남아공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아파르테이트 체제를 넘어서는 권력과 권리 간의 민주적 메카니즘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고, 베네수엘라도 2005년에 21세기 사회주의를 선언하고 난 이후 현재까지 ‘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세상의 민주적 권력 메카니즘을 제도화하였다.²⁵⁾ 스탈린은 ‘소비에트정권은 파리코문의 발전이며 완성이다.’²⁶⁾라고 하며, 권리지배의 완성모델이 권력지배임을 주장한다. 권리지배를 주장하던 항쟁세력들이 권력지배와 공존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권리주체들이 왜 권력의 강제를 채택하는가에 대하여 마키아벨리의 『군주론』9장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귀족의 욕구에는 ‘명령하려는 것’과 ‘지배하려는 것’의 구분을 두지 않았지만, 인민들의 욕구는 ‘명령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한다.²⁷⁾ 즉 인민들의 기질(umori)은 지배를 거부할 수 있다면,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명령, 즉 권력의 강제에 대한 자발적동의, 자발적위임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소외된 권리의 은폐수단으로서 ‘자발적동의’를 사용하는 것과 항쟁주체들의 동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결정적인 문제는 지도자이다. 지도자들의 사익에 따른 비정상적인 행동은 한편으로는 합법적으로는 결코 ‘귀족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생각을 인민들에게 각인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들에게 ‘명령받지 않으려는 욕구’를 불러일으켜 권력의 명령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²⁸⁾ 자본주의권력은 권리의 소외를 권력의 근거로 삼는데 비해 항쟁권력은 소외된 권리의 극복을 권력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다. 또한 권력을 위임받은 지도자가 얼마나 철저히 권리지배를 정착시키기 위해 헌신하는가에 의해 권리주체인 인민은 명령과 강제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권리지배의 권력화는 ‘인민의 권리를 배제시키거나 분리하여, 국가나 사회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체제’를 ‘인민의 권리체제’로 전화하는 구조 혹은 인민의 권리로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이다. 베네수엘라 헌법 제89조 제1항은 인민의 권리를 현실의 권력으로 변화시킨 경우이다. 베네수엘라 헌법은 “어떠한 법률도 노동자의 권리와 급부에 관하여 그 불가침성과 향상성을 손상시키는 조항을 제정할 수 없다.”²⁹⁾고 규정하였다. 베네수엘라라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의 각종 권리들을 권력으로 실체화하였다.³⁰⁾ 베네수엘라

25) 김영수, 「권리와 권력의 융합 메카니즘과 국가사멸의 시원성」,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봄 학술대회 자료집』, p.115

26) 이는 1924년 레닌 사후 스페르들로프대학에서 행한 강연록 「레닌주의의 기초」에 등장한다. 이어지는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에트정권의 본질은 자본가와 지주들에게 압박받던 그 계급들의 가장 대중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조직들이 지금은 「전 국가권력, 전국가기구의 항구적이며 유일한 토대」로 되었다는데 있으며 「가장 민주주의적인 부르주아공화국에 있어서도」 법률상으로는 동등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에 있어서는 무수한 수단과 흉계로 말미암아 정치생활에의 참가와 민주주의적 권리 및 자유의 향유로부터 제외되었던 바로 그 대중이 지금은 국가의 민주주의적인 관리에 대한 항구적이고 확실한 더구나 결정적인 참가에 인입된다」는데 있다.(레닌, 24권, p.13참조) 이런 까닭에 낡은 부르주아민주주의적 의회형태와는 원칙적으로 다른 국가조직의 새로운 형태인 것이다.’(이.웨.쓰탈린, 『이.웨.쓰탈린 저작집』제6권(1924), (모스크바, 외국문서적출판사, 1955), p.166) *이 번역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북한 서적인데 북한출판사에 대한 서지가 없는 점이 특이하다.

27) 광준혁, 『지배와 비지배』, (서울: 민음사, 2013), p.188

28) 광준혁, 『지배와 비지배』, (서울: 민음사, 2013), p.197

29) 베네수엘라, 헌법 제89조 1항, 2009(세계법제정보센터)

30) 김영수, 「권리와 권력의 융합 메카니즘과 국가사멸의 시원성」,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봄 학술대회

의 국(공)영 기업에 대한 인민의 감독을 실질적으로 단행할 수 있는 시민사회권력이 헌법 제 273조로 보장되었다. “시민사회권력은 인민의 수호자, 검찰총장, 감사원장으로 구성되는 공화국 윤리위원회이고, 이 권력체는 국(공)영 기업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헌법 281조 2항은 공화국 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과제까지 제시하였다. “시민권력체는 국가의 공공사업이 적절히 기능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고, 공공재화를 생산·관리하고 공급하는 행정의 업무가 독단 행위, 권력 남용, 과실 등으로 인민의 합법적이며 집합적, 광범위적인 모든 이익과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한다.”

남아공은 대표적인 것이 ‘국가권력의 4권분립’이다. 남아공 헌법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그리고 시민사회권을 보장하였다. 시민사회권력은 구체적으로 헌법상의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독립된 국가기구로 구성되었다. ‘공공호민관’(Public Protector), ‘국가회계감사관’(Auditor-General), ‘인권위원회’, ‘문화·종교·언어 공동체 보호발전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선거위원회’는 남아공 인민의 사회적 권리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국가권력의 기구이다.³¹⁾ 모든 국가기구와 그 구성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수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그 예산안을 토대로 국가의 예산을 확정한다. 남아공의 시민사회권력은 모든 국가기구에 인민의 권리를 투영하기 위한 진지이자, 인민의 권리를 권력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국가가 소멸되지 않거나, 지배-피지배의 통치관계가 지속되는 한, ‘권리 중심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 중심의 관계’ 속에 인민의 권리를 투영시킬 수 있는 권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인민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국가에 대한 인민의 지배관계로 변화시키며 국가소멸의 조건을 마련해가는 것이다. 만약을 가정하면, 권리지배의 완성은 국가소멸은 물론 권리지배의 소멸을 의미할 것이다.

ㄷ. 권리의 소멸

국가가 소멸되고, 사적소유가 없어지고 공동소유가 전면화되어도, 비록 개인적이지만 개별 노동능력 차이에 따른 권리의 불평등은 지속된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사적소유가 철폐된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에서도 부르주아적 권리인 평등한 권리는 잔존한다. 일한 만큼 분배하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사회는 노동량에 대해 상품교환의 원리인 등가교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평등의 요체는 평등한 척도인 노동으로 측정된다는 데 있고…권리의 요체는 본성상, 오직 동일한 척도의 적용에만 있을 수 있다.”³²⁾ 이처럼 능력만큼 분배받는 노동의 등가교환원리는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분배되는 공산주의 높은 단계에 들어서 사멸한다. 상품의 이중성에서 교환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상품규정 자체가 소멸하듯이 권리의 이중성도 권리를 교환할 필요성이 사라지면 소멸한다. 그러나 평등한 권리가 부르주아적 권리라는 것은 부르주아국가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낮은 단계이든 높은 단계이든 공산주의는 국가가 소멸한 상태를 전제한다. 이는 낮은 단계 공산주의에 부르주아적 잔재가 남아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혁명 전 레닌의 글을 보자.

자료집』, p.117

31) 김영수, 「권리와 권력의 융합 메카니즘과 국가사멸의 시원성」,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봄 학술대회 자료집』, p.119

32) K. Marx, 「고타강령초안 비판」(1875),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4』, (박종철출판사, 1991), pp.376-377

어떤 자본가들과 계급들도 존재하지 않게 되면 국가도 사멸하게 되며 그 결과 어떤 계급도 억압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부르주아적 권리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존재하고 실질적인 불평등이 인정되는 한 국가는 완전히 사멸한 것이 아니다. 국가가 완전히 사멸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공산주의가 필요하다.³³⁾

첫 번째 문장은 맞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은 마르크스의 「고타강령초안비판」에 대한 오독으로 보인다.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에서도 부르주아적 권리가 잔존한다는 것을 부르주아국가도 잔존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낮은 단계 공산주의 역시 공산주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국가소멸로서만 도래하는 공산주의사회에서 여전히 국가가 존재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오독은 러시아혁명이후 국가가 잔존하는 공산주의라는 인식하에 전시공산주의라 불리는 무리한 공산주의정책의 추진을 초래했다. 물론 1921년 레닌은 이러한 오류를 명확히 반성하고 바로 잡았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명확히 분리하고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행기, 과도기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1921년 이후에도 혼동은 계속된다.³⁴⁾ 오히려 혼동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정리한 것은 스탈린이다. “공산주의 시대에 가서도 역시 우리에게 국가가 보존되겠는가? 그렇다…만약 자본주의적 포위가 없어지고 사회주의가 포위하게 되면 물론 국가는 보존되지도 않고 사멸될 것이다.”³⁵⁾ 일국적 공산주의란 불가능하며 자본주의의 포위 하에서 일국혁명은 일국에서 고립된 지역적 항쟁세력의 신세와 다를 바 없다. 프루동의 화폐 없는 사회 실험이 자본주의의 포위 속에선 공상이었듯이, 권리의 지배도 제국주의권력의 포위 속에선 공상이다. 레닌이 혁명 직후 화폐를 폐지하고 결재권으로 대신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물신주의를 감수하며 화폐를 부활시킨 것처럼, 국가권력물신주의를 감수하면서도 국가권력을 받아들였던 것은 바로 자본주의포위 때문이었다. 엥겔스는 『반듀링론』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 국가는 사멸해야 한다고 했는데, 단, 이것은 모든 나라 또는 대다수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승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부르주아적 권리의 시원은 자본주의생산양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그것은 당연히 세계적인 것이다. 국가를 전제로 한 권리지배의 권력화가 세계적 범위의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고타강령초안비판」에서의 마르크스의 ‘부르주아적 권리 잔존’ 논리에 따르면 권리의 소멸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폐지, 국가의 소멸보다 뒤에 이루어지는 셈이다.

국가는 권력의 물신화이며 이는 권리의 이중성 속에 내포된 모순으로부터 시작된다. 권리의 이중성이 권리의 소외로 나아가느냐, 권리의 단결로 나아가느냐에 의해 국가와 항쟁의 길이나뉜다.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며, 국가로서의 시민사회와 국가로서의 국가 전체가 변혁되지 않는 이상 부분적인 개조로는 국가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본주의적 교환이 우리를 소외시키는 힘이며 지배권력을 생산·축적시키는 원천이라는 사실, 따라서 나 자신도 그 공모자라는 사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즉 나의 밖에 저항할 국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관성자체가 국가라는 사실이다.

33) V.I. 레닌, 김영철 역, 『국가와 혁명』, (서울: 논장, 1988), pp.117-118

34) 예를들면 1922년 3월 러시아공산당중앙위 정치보고에서 레닌은 ‘이행기란 타파되었지만 아직 절멸되지 않는 자본주의와 이미 탄생은 하였으나 아직은 약한 공산주의 사이의 투쟁의 시기’라고 정의한다. ‘약한 공산주의’가 낮은 단계 공산주의라면 레닌은 이행기를 공산주의초기단계까지로 보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존속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V. I. Lenin, “Political Repor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Russian Communist Party(Bosheviks)(1922. 3. 27).” *Collected Works*, vol.33,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65), p.263참조)

35) 스탈린, 「소련공산당(볼셰비키)제18차 당대회에서 행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939); V.I. 레닌, 김영철 역, 「국가론-부록」, 『국가와 혁명』, (서울: 논장, 1988), p.199

따라서 자각된 자유의지로서의 선택만이 권력지배를 배제하고 권리지배를 완성시켜나가는 길이다.³⁶⁾

(2) 평 화

1) 국제체계

근대유럽국제체계는 예외상황을 결정하는 주권자에 의한 자본의 시초축적으로부터 비롯된다. 자본의 축적은 권력의 축적을 전제하고, 자본축적을 통해 권력은 재축적 된다.³⁷⁾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에 의해 주권을 법적으로 표현한 체계가 등장했다. 이로부터 주권은 국내에서는 최고의 권력으로 심화되고, 국외에서는 패권으로 확장되었다.³⁸⁾ 유엔체계는 근대국가간체계의 집적체이다. 근대국가간체계는 네 가지 계기로 전개되어 왔다. 주권체계, 세력균형체계, 집단안보체계, 일국패권체계가 그것이다. 주권체계는 1648년 네덜란드의 베스트팔렌조약(Peace of Westfalen)으로, 세력균형체계는 1815년 이후 영국의 유럽협조체계(Concert of Europe)로, 집단안보체계는 1919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과 1945년 국제연합(United Nations)으로, 미국패권체계는 트루먼 독트린 등으로 이미 모습을 드러낸 바 있었다.³⁹⁾ 현재 주권과 패권이 일치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미국패권체계가 국제체계의 예외를 결정한다. 집단안보체계를 기준으로 국가간체계를 재배치하면 집단안보-주권간체계, 집단안보-세력균형간체계, 집단안보-미국패권간체계가 된다. 유엔 창설의 법적 문서인 유엔헌장에는 이러한 간체계(間體系)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⁴⁰⁾

36) 자기결정권부터 여기까지의 논의는 졸저, 「국가와 항쟁」, 『‘국가란 무엇인가’ 심포지엄자료집』, (복합문화공간에무, 2017.5.25)에서 재인용하였다.

37) 이탈리아도시국가의 군주들이 전쟁 수행을 위해 발행한 채권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과 자본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 속에 발전해왔다. 권력이 자본이고 자본이 권력이었다. 미국이 초기유엔에서 발휘한 권력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란 사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권력과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계기는 전쟁과 같은 위기라는 점이다. 정상적 상황보다 예외상황에서 권력은 역설적으로 강화되었다. 예외상태란 그럼에도 무정부상태나 혼란상태와 다른 무엇이기 때문에 법질서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법학적 의미에서 하나의 질서가 존속한다. 주권체계가 생겨나기 전인 30년전쟁기간 동안 혼돈의 유럽국가간체계에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질서는 존재했고 이 질서를 결정하는 권한이 네덜란드연합주에, 특히 고도금융세력에 부여되어 있었다. 자본과 권력의 상관관계에 대해 공산당선언의 유명한 문구를 떠올릴 수 있다. “부르주아지는 자기의 모습대로 세계를 창조한다.”

38) 권력 역시 다른 권력과, 주권 역시 다른 주권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일자와 다수로서 관계한다. 헤겔 『대논리학1-존재론』의 하나와 다수의 관계는 하나와 다른 하나사이의 반발과 견인으로 발전한다. 다른 주권과 반발하고 견인하는 과정에서 주권은 양적으로 축적된다. 이때부터 주권은 질의 개념에서 양의 개념으로 전화한다. 국내의 주권에 적용되던 ‘예외상황 결정’론은 국가간에 적용되면 패권이 된다. 다른 나라의 운명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가 패권국이 된다.

39) 모델스키(George Modelski)에 의하면 근대국가간체계는 1500년경에 성립되었으며, 500년 동안 세계의 지도력(world readership)과 세계전쟁(global war)이 규칙적으로 순환해왔으며 100년 정도를 주기로 국가간체계의 순환이 되풀이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장주기(long cycle)다. 이 과정에서 모두 네 개 국가가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한다. 포르투갈(1500~16세기말), 네덜란드(17세기), 영국(18세기~나폴레옹전쟁, 1815~1945), 미국(1945~)이다(Paul R. Viotti and Mark V. Kauppi,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alism, Pluralism, Globalism* [New York: Macmillan, 1987], p.59). 장주기론은 세계체제론자인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이나 아리기(Giovanni Arrighi) 등의 저술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40) 진유정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유엔체계는 기존의 비엔나, 비스마르크, 베르사유체제의 기본구조와 특성을 조합한 국가간체계라 할 수 있다. 먼저 협조 또는 지도체제적인 모습은 유엔안보리 상임이

나는 이를 유엔체계라고 한다. 집단안보-주권간체계는 유엔헌장 2조 1항의 주권평등 조항으로, 집단안보-세력균형간체계는 유엔안보리로, 집단안보체계 자체는 유엔총회로, 집단안보-미국패권간체계는 유엔헌장 8장의 집단적자위권과 지역안보기구 조항으로 구체화되었다.

유엔헌장의 예외는 제8장에서 작동한다. 1945년 유엔헌장 제정회의가 열렸을 때 미국은 유엔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먼로주의에 입각한 ‘지역방위권’을 명문화한 헌장 조항을 억지로 수정하여 통과시켰는데 이는 결국 나중에 침략적 블록을 구축하는 법적근거로 이용되었다.⁴¹⁾ 헌장 51조에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의 권리”를 규정해놓고 있는 것은 안보리나 총회기능의 극대화에 중요한 방해물이다.⁴²⁾

한국전쟁은 처음으로 군사적 강제조치가 유엔의 이름으로 취해졌다는 점에서 유엔체계의 한 절정이었지만, 유엔의 법적·집단안보적 이상이 미국패권에 의해 왜곡됨으로써 유엔창설의 정신을 불구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쇠퇴가 시작된 절정이었다. 1945년에서 1990년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70개가 넘는 주요 전쟁은 헌장 7장 밖에 방치되고 있었다.⁴³⁾ 그에 비해 한국전쟁은 최초로 유엔의 이름을 단 군사적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의심스러웠고, 때문에 유엔 창설 이후 체계 내 적대와 균열의 진폭이 가장 컸던 사건의 하나가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권력정치는 집단안보기구인 유엔을 내세워 무질서 상태에서의 패권(Hegemony)을 강화하는 데 성공하지만, 동시에 미국패권체계를 일시 후퇴시키는 구조를 만들고야 한다. 미국은 소련의 거부권행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아예 안보리 구조를 붕괴시키고 총회에 힘을 부여하기로 했다. 유엔창설의 핵심당사자였던 강대국 소련을 배제하고, 친미적인 약소국들과 손잡은 것이다. 이는 안보리 체제를 총회 체제로 바꾸기 위해 시도한 1950년 11월의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총회 체제는 뜻밖에도 제3세계의 헤게모니를 양성시킨 모태가 되었다. 고양이를 키우려다 호랑이를 키운 셈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총회 회원국들의 주권체계가 강화되고 미국의 패권도 흔들리게 되는 역설이 발생했다. 미국은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성과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전쟁 내내 유엔에서 벌어진 영국과 미국의 심각한 외교 갈등이 그러한 대가였다. 물론 그런 대가는 미국이 유엔에서 패권을 장악함으로써 누리는 특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미국의 통합군사령부(Unified Command)가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란 이름을 달고 유엔의 군대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패권국이 누리는 특

사국인 5대 열강에게 거부권이 주어짐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 기본 틀은 냉전의 전개와 더불어 동서간의 새로운 블록 형성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동맹체계적인 특징은 유럽에서의 NATO와 바르샤바동맹(Warsaw Pact)이라는 군사동맹의 형성·대치 및 극동에서의 중·소 군사동맹과 미·일 군사동맹으로 구체화되었다. 집단안보체계적 특징은 국제연맹과 유사한 유엔 설립으로 구체화되었다.”(진유정, 『근대국제체계의 변화와 연속성에 관한 연구: 체계이론과 현실주의론의 관점에서』, 동국대학교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pp.70, 127).

41) 시바츠포 외, 미국사연구회 역, 『아메리카 제국주의사』(서울: 국민도서, 1989), p.188

42) 조경근, 「집단안전보장의 이론과 실제: 한국전을 통해서 고찰해 본 문제점과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국제연합기능의 변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1982, p.34

43) 냉전 기간 중 안보리가 무력 사용을 허용한 예는 한국을 제외하면 로디지아뿐이다. 구속력 있는 비군사적 제재 역시 단 두 번 채택되었는데 한 번은 남로디지아에 대한 경제봉쇄(1966~1979)였고, 또 하나는 1977년 남아프리카에 부과된 무기금수였다. 1962년 쿠바미사일위기에서 미국은 일차적으로 미주기구(OAS)의 수권에 의해 일방적인 봉쇄조치(당시 미국 정부는 이를 quarantine으로 표현)로 대응했고 미국의 베트남전 수행에는 유엔총회나 안보리의 손이 미치지 않았다.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거듭된 충돌에도 안보리는 7장에 의거 제재를 채택하겠다는 위협만 되풀이하였을 뿐 실천하지는 못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간섭(1979~1989)도 안보리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김대순, 『국제법론』, 제11판 [서울: 삼영사, 2006], p.1086 참조).

권 중의 하나였다. 길핀(Robert Gilpi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패권국가가 국제기구와 같은 일종의 공공재를 제공하는 이유는 국제경제체계 전체의 복지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선호하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이 패권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⁴⁴⁾ 한국전쟁시기 넓은 의미에서의 ‘집단’안보사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안보사상에 의해 대체되었다. 집단안보의 원칙이 지역안보형태로 변형되어 놀랄 만큼 확대되었다는 것은 2차대전 이후 아메리카외교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의 하나였다.⁴⁵⁾ 유엔헌장을 통해 제도화에 성공한 자위권과 지역안보 개념은 ‘미국패권체계’의 발명품인 것이다. 그리하여 유엔체계의 핵은 안보리이며, 안보리의 핵은 미국패권이다.

2) 유엔의 한계

1. **약소국:** 집단안보기구로서의 유엔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유엔전체회원국의 압도적 힘으로 응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응징대상에서 강대국은 제외된다. 왜냐하면 강대국이 빠지면 압도적 힘을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시 소련에 대해 어떤 제재나 경고가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이다. 2차대전 이후 강대국끼리의 전쟁이 없었던 이유 역시 마찬가지이다. 즉 유엔의 적은 약소국으로 한정된다.

2. **유엔상비군:** 유엔헌장에 의하면 유엔은 유엔상비군을 전제했다. 그러나 이는 1947년 미·소간의 이견으로 유엔군사참모위원회 설치가 불발되면서 실패했다. 한국의 유엔사는 유엔의 군대가 아니며, 평화유지군은 유엔헌장에 근거가 없는 조직이다. 따라서 유엔이 취할 수 있는 강제조치에 근본적인 한계가 설정되어 있는 셈이다. 이는 유엔역사 상 헌장 42조에 의한 군사조치 결정이 한 번도 없었던 이유이다. 달리 말하면 대북제재결의안이 41조, 제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3. **안보리결의:** 유엔의 군사조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헌장 39조에 의해 어떤 사태가 ‘평화의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 중, 침략을 구성한다고 결정되고, 이어서 ‘권고’와 ‘조치’ 중 조치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엔역사상 단 한번도 ‘침략’이 결정된 적이 없으며, 그에 따른 ‘조치’가 결정된 적도 없다.

이처럼 유엔의 범위는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제약되었다. 그럼에도 유엔의 범위 밖에 있는 미국패권이 제공하는 권력과 권위에 의해 그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켜온 것이다. 미국패권이 이러한 간격을 채워주지 않으면 유엔의 한계는 바로 가시화된다. 문제는 끊임없는 도전에 의해 미국패권체계의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44) Stephen D. Krasner,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 1 in Stephen D. Krasner, 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 Spring 1982, pp.197-199

45) 체풀테펙 및 리오데자이네로(Chapultepec and Rio De Janeiro)의 의정서 가운데서 아메리카 여러 나라는 <신세계>에 있어서 평화에 대한 반역자에 대해 공동행동을 취할 것을 협정하였다. 1949년 북대서양조약이 체결되었고 NATO는 지역안보의 원칙을 유럽에 적용한 것이었다. 한국전쟁을 겪은 후 공화당의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정부는 아시아에서 여러 개의 지역안보협정을 체결했다. 장개석정부와, 이승만정부와, 소위 SEATO조약의 형식으로 태국.파키스탄.필리핀.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프랑스.영국과 체결하였고, 남베트남정부와 1951년 평화조약형식으로 일본과 각각 협정을 체결하였고, 중동평화를 증진할 목적으로 바그다드조약(Baghdad Pact)을 발전시켰다. 이리하여 비동맹정책은 폐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극적인 형태로 전복되고 말았다.(Dexter Perkins, *The American Approach to Foreign Policy*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박무성역, 『미국외교정책사』 (서울: 범조사, 1983), pp.144-145)

3) 유엔체계와 미국패권의 균열

1. 중국핵과 유엔총회

1964년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부터 미국에선 예방전쟁론이 강력히 대두되었지만, 미국은 결국 대만미군철수를 결정하고, 중미수교가 이루어졌으며, 유엔에서는 대만정부를 내쫓고 중공이 안보리회원국이 되었다. 유엔총회를 장악한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의 ‘중국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강대국이 되었으니 안보리에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먹힌 것이다.⁴⁶⁾ 한국전쟁 시 유엔의 적으로 규정됐던 중공이 유엔의 안방을 차지한 것이다. 국제연맹과 달리 유엔권력의 가장 큰 특징은 안보리를 통해 총회를 통제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 시 미국은 소련의 거부권행사로 무력화된 안보리를 대신하기 위해 총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유엔의 규칙을 바꿨다는 점에서 이는 미국패권의 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핵을 보유한 60년대, 제3세계비동맹운동국들에 의해 장악된 총회가 안보리와 미국을 통제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덫으로 미국을 옴아맨 것이다. 유엔내 미국패권이 가장 크게 후퇴한 시기가 바로 이때이다.

2. 핵과 자위권

헌장51조의 자위권은 미국이 유엔의 범위 밖에서 유엔을 무시하고 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였다. 그런데 2017년 9월 26일 리용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유엔헌장에서 개별국에 보장된 자위권 행사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자위권은 유엔안보리결의가 있기 전까지만 보장되므로 안보리소집을 방해할 권력이 있거나, 안보리소집에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인 약 1일 이내에 전세를 역전시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1일 이내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자위권행사는 불가능한 것이다. 즉 북한도 핵미사일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자위권행사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자국을 위해 삽입했던 조항인 자위권의 역습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미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헌장51조가 도전받게 되었고, 유엔의 운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3. 핵보유국과 안보리체계의 균열

제7차당대회를 통해 북은 ‘핵보유국으로서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세계비핵화는 장기목표, 핵보유국지위획득은 단기목표임을 알 수 있다. 안보리상임이사국만이 공식적인 핵보유국이다. 핵보유와 안보리의 의석사이엔 어떤 법적상관관계도 없다. 그러나 세력균형체계에 대항하여 수립된 집단안보기

46) Matthew Jones, *After Hiroshima: The United States, Race and Nuclear Weapons in Asia, 1945~196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434-435; 정옥식, 『핵의 세계사』, (서울: Archive, 2012), p.235 1963년 10월 영국정부가 작성한 외교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중국은 핵보유국지위를 확보한 첫 번째 후진국이 될 것이다. 중국위상은 피폭당한 히로시마를 기억하는 아시아인과 또 그들의 비핵화 이상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중국이 유럽과 북미선진국의 핵독점을 무너뜨렸다는 경외감에 의해 상쇄되고도 남을 것이다.”(같은 책, p.230) 영국의 이 같은 관측은 유엔에서 정확하게 들어맞은 셈이다.

구인 유엔에서 여전히 세력균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보리이고 세력균형의 최후보루가 핵이기에 핵과 안보리의 현실적관계가 성립된다. 실제 핵보유국이면서 안보리체계에 도전하지 않는 나라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달리 북은 리용호의 유엔총회연설을 통해 확인되듯이 안보리체계에 도전하는 국가이다. 북이 비공식핵보유국이 아닌 공식핵보유국의 지위를 노리는 것은 명확해졌다. 매년 ‘최고수준’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안보리대북제재결의가 9회나 이루어졌지만 안보리는 강력함 대신 무력함만을 보여주고 있다.⁴⁷⁾ 유엔은 만주국침략을 규탄하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일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국제연맹 신세가 되고 말 것인가!

북이 핵보유국진입을 목표로 한다면 유엔안보리의 세력균형을 흔드는 것이 목적이 되지만, 세계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면 안보리의 붕괴가 목적이 된다. 유엔창설의 취지로 볼 때 안보리의 붕괴는 유엔의 붕괴이다. 북은 핵보유와 안보리체계를 연계시킴으로써 유엔회원국이면 서도 유엔밖에 존재하게 되었다. 법안에 있으면서 법밖에도 존재하는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다음단계는 법 밖에서 법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계권력은 이 단계에서부터 인지된다. 현재 북한은 물론 중국도 이러한 역할을 시도하진 않고 있다. 지위와 역할사이의 간극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어떤 역할을 할지에 따라 북핵의제는 유엔안보리체계에 현상변경을 초래할 수도 있다.

4. 미국우선주의

미국패권은 누구보다 미국 스스로에 의해 몰락해갈 때 가장 결정적일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는 단지 트럼프만의 공약이 아니라 거의 모든 대통령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른 것은 모든 나라가 미국이 지배하는 질서 안에 있어야 하지만 미국만은 자기가 수립한 질서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패권국도 영원히 법질서의 밖에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국의 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능력이 진정한 패권인 것이다. 즉 법밖에서 있으면서 법안에 있어야 한다.⁴⁸⁾ 그러나 이를 유지할 의지와 능력이 없을 때 패권은 몰락하기 시작한다. 패권의 생명은 안정성(Stability)이다. 불안정이나, 불안정에 기반한 균형(balance)상태는 패권후퇴의 전조이다. 미국패권의 융성이 권력과 권위의 결합에 있었듯이 미국패권의 몰락은 권력과 권위의 균열에서 시작된다. 이를 체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주권체계: 주권국으로서 미국의 ‘우선주의’는 당연한 전략이다. 그러나 이는 패권국의 전략은 될 수 없다. 패권국은 자국의 패권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 공공재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결국 패권국에서 일반주권국으로 전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우선주의에 함축되어 있다.

세력균형체계: 세력균형에는 협조체계와 동맹체계가 있다. 미국이 선택한 것은 후자이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은 대서양동맹과 태평양동맹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으로 나타난 것은

47)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17호에 이르기까지 안보리는 헌장 39조에 의해 ‘평화의 위협(threat of peace)’을 확인하고, 헌장 7장 41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 이는 유엔 역사상 42조의 군사적 강제조치가 ‘결정’된 바가 없었다는 점에서 최고수준이란 표현은 맞다. 그러나 북에서 반박하듯이 평화적 해결은 아니다. 평화적 해결은 헌장6장 38조까지의 조치이다.

48) Carl Schmitt, *Politische Theologie: Vier Kapitel zur Lehre von der Souveränität* 2판, (Berlin: Duncker & Humblot, 1934)/김항 역, 『정치신학: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서울: 그린비, 2010), pp.18,22,25,16참조

동맹홀대, 동맹의 경제환원주의이다. 우방중의 우방인 캐나다를 모욕주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회담성사를 약속하고 하루도 안 돼 한국대통령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북·미회담을 취소한다. 전통우방에게도 언제든 관세폭탄을 터트린다. 트럼프의 정책에 전통적인 미국 동맹의 교의 규칙과 절차에 대한 존중은 안 보인다. 미국의 동맹은 너털너털해졌다.

유엔체계: 대북제재 등에는 유엔결의를 이용하지만 이라크전쟁이나 시리아공습에서 미국은 유엔안보리결의를 무시한다. 그러나 이는 이미 미국의 압박하에 제정된 유엔헌장 51조 집단적자위권조항에서부터 내재된 균열이었다. 미국패권체계와 유엔체계의 균열선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이 유엔에서의 패권적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에 다가서고 있다.

미국패권체계: 패권국미국의 한계는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경제력도 군사력도 예전 같지 않다. 이란핵합의를 파기하면 다음수순은 제재일텐데 유엔과 유럽연합의 협조가 난망인 상태에서 미국정부의 힘만으로 제재할 능력이 과연 있는가가 의문이다. 이는 역으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능력의 한계에 봉착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5. 사회주의중국의 굴기

중국사회주의는 스탈린식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스탈린식사회주의는 레닌의 신경제정책으로 표면화되어 스탈린까지 지속된 과도기론, 혹은 후퇴테제와 수령제를 특징으로 한다.⁴⁹⁾ 수령제는 당의 관료주의와 투쟁하면서 인민의 자발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창안된 정치제도로 설명된다. 즉 당관료들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수령이 허용함으로써 인민들의 정치경제적 진출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마오의 문화대혁명에 등장했던 조반유리(造反有理) 역시 당관료화를 비판하는 인민의 주동적 운동이었다.⁵⁰⁾ 그러나 마오에겐 1930년대 스탈린체제의 성공요인이었던 경제성장과 수령제 중 경제적 기반이 허약했다. 시진핑에 의해 부활된 수령제는 경제적 기반이 강화된 토대위에 공산당발전을 위한 법칙으로 정립되었다.⁵¹⁾

사회주의국가가 서구 금융자본투자를 받아들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식은 사회주의와 반대되는가 일치하는가? 등가교환에 기초한 상품경제와 달리 금융은 채권채무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채권채무관계란 고대시기 채무노예처럼 적대적 사회관계로 표현된다. 즉 금융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적대적 불평등관계가 심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자본론』^{3권}은 금융자본의 다른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신용·은행제도는 자본의 사적성격을 철폐하며 따라서 자기 안에 자본의 철폐를 내재적으로 (비록 내재적일 뿐이기는 하지만)포함하고 있다…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부터 결합노동(사회주의)의 생산양식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신용제도가 강력한 지렛대로 역할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⁵²⁾

49) 이완중, 『10월 혁명사』, (서울: 우물이 있는 집, 2004), p.465참조

50) 중국 공산당이 선포한 문화대혁명은 사회주의식 근대화와 사회주의의 완성을 위해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당내 실권파’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경제 토대와 맞지 않는 모든 상부구조의 개혁’을 대중운동을 통해 성취하고, 민주적인 정치구조를 이룩하는 것이었다. (이정희, 「문화대혁명 초기 상하이인민공사에 관한 연구 :파리코뮌 모델과 노동자 조반운동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2012), p.1

51)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를 견결히 수호해야」, 『인민넷 조문판』, (2017년 04월 24일) ; <http://korea.cpc.people.com.cn/75433/75445/15658004.html>

52) Karl Marx, *Capital* III, (Penguin Books Limited, 1981)외/김수행 역, 『자본론III』(下), (서울 : 비봉출판사, 2004, 제1개역판), p.747

자본주의경제를 최고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나 사회주의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금융을 통한 집적과 집중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금융은 본질적으로 적대관계와,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한다. 사회주의적 축적을 위한 금융의 긍정성과 적대관계의 심화라는 부정성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봉합하느냐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핵심관건인 것이다. 자유주의경제체제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조정에 맡긴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는 국가의 개입이 늦어지면서 확산되었다. 자율조정시장의 신화를 단호히 부정하며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으로서의 수령제가 요구되었고 시진핑의 개헌이 단행되었다.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에 대한 판단은 뒤로 하고 사회주의체제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요소를 체제의 핵심내용으로 수렴해 왔다. 스탈린당시 세계경제세계정치연구소를 이끌던 예브게니 바르가(E. Bapra)는 자본주의불균등발전론을 제시했다.⁵³⁾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뿐 아니라 사회주의도 국가라는 권력형식을 채택하는 한 불가피한 이론으로 보인다. 즉 사회주의국가불균등발전론이다. 불균등은 사회주의국가간 갈등과 충돌 심지어 전쟁까지 초래한다. 소·미관계와 중·미관계의 차이는 양극간 적대전략이나 헤게모니 지배전략이냐로 구별된다. 1979년 중·미수교이후 중국은 국제체계에 적응하며 헤게모니를 확장시키는 전략을 펼쳐왔다. 유엔에 대항하기 위해 코민테른을 재건하기보다 유엔안보리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고, 달러와 대항하기 위한 통화전쟁 대신 IMF결제통화 버스킷에 참여하여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5축체계를 구성하며 공식적으로 3위의 결제통화로 등극시켰다. 미국패권에 도전하는 사회주의중국의 굴기가 현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배경이다.⁵⁴⁾

6. 초국가기구

안보리의 설립은 제국주의국가나 사회주의국가 모두 애초의 이상과 달리 국가간 불균등발전론을 현실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스탈린은 “자본주의적 포위가 없어지고 사회주의가 포위하게 되면 국가는…사멸될 것이다.”⁵⁵⁾라고 했다.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사회주의화 되는 조건에서 국가가 소멸하는 공산주의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이때 가서야 불균등발전의 전제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국적 공산주의란 불가능하며 자본주의의 포위 하에서 일국혁명은 일국에서 고립된 지역적 항쟁세력의 신세와 다를 바 없다. 프루동의 화폐 없는 사회 실험이 자본주의의 포위 속에선 공상이었듯이, 국가권력이 아닌 인민권리의 지배도 제국주의권력의 포위 속에선 공상이라고 본 것이다. 북은 제7차당대회를 통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재천명했다. 1970년 제5차당대회 이래 두 번째이다. 중국공산당에 의하면 사회주의사회로부터 공산주의사회로 이행하는 데는 국제적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이 완수되고 제국주의가 소멸된 조건”⁵⁶⁾이다. 이 조건에 따른다면 조선노동당 7차당대회에서 언급된 ‘세계자주화’와 ‘사회주의완전승리’가 결합될 때 공산주의의 조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세계자

53) 노경덕, 「세계경제대공황과 스탈린주의 경제학담론 1929~1936-바르가를 중심으로」, 『歷史教育』第115輯, 2010.9, p.249

54) 4. 미국우선주의와 5.사회주의중국의 굴기는 拙著, 「金正恩の 攻撃的平和主義」, 『李時雨講演記録集 in OKINAWA 2018』, (沖繩: 沖韓民衆連帶, 2018), pp.30-34 재인용.

55) 스탈린, 「소련공산당(불세비키)제18차 당대회에서 행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939); V.I. 레닌, 김영철 역, 「국가론-부록」, 『국가와 혁명』, (서울: 논장, 1988), p.199

56) 許滌新 主編, 『政治經濟學辭典(下)』, (北京: 人民出版社, 1981)/조복민 역, 『정치경제학사전(하)』, (서울: 중원문화, 1990), p.313

주화와 사회주의완전승리가 국제조직으로 구체화된다면 제6차 인터내셔널⁵⁷⁾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샤오강(小康)사회나 다통(大同)사회를 말하는 중국공산당이나 조국통일과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말하는 조선노동당의 당대회문건에 이같은 공산주의로의 전망이 언급되어 있진 않다. 아직 먼 목표인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현 단계 목표는 유엔체계의 붕괴가 아닌 개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이룩한 법-권력의 융합에 의한 패권체계를 '대체'⁵⁸⁾할 준비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일대일로등 새로운 국제체계의 시도는 유엔-미국패권체계와 병존하는 중층화 단계에 불과하다. 유엔체계에 정면도전하며 미래를 도모하는 '표류'단계를 거쳐 유엔체계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계기구가 요청될지 모른다. 국가간(inter-national)기구의 한계상황에서 요청되는 새로운 기구라면 그것은 초국가(trans-national)기구로서 제안될 것이다. 역사상 초국가로서 인정받은 기구는 제3인터내셔널, 즉 코민테른이 있다. 제6인터내셔널 같은 새로운 초국가기구의 출현이 요구될 것이다.⁵⁹⁾

나가는 글

나는 처음 국내문제로서의 민주주의와 국제문제로서의 평화를 구분하고 논의를 시작하였다. 국가라는 명확한 경계를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닌 주체로서의 민주주의의 완성은 국가의 소멸, 권리의 소멸로 귀착됨을 보았다. 또한 권리관계의 소멸은 국가간의 문제인 전쟁과 평화를 다른 차원에서 전개시킬 것이다. 권력에 의한 지배에서 권리에 의한 지배로의 전환은 권력을 형식주의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권력의 배제를 실현하기 위해 권리지배는 권력지배를 적극 활용한다. 권력만이 권력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57) 제1인터내셔널은 마르크스, 제2인터내셔널은 독일사민당,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은 레닌, 제4인터내셔널은 트로츠키, 제5인터내셔널은 차베스에 의해 주도되었다.

58) 이는 마호니(James Mahoney)와 텔렌(Kathleen Thelen)의 점진적 제도변화모델을 전제하였다. 점진적인 변화는 중층화(layering), 표류(drift), 대체(displacement), 전환(conversion)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중층화란 기존의 규칙 위에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고, 표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규칙의 영향력이 변화되는 것이다. 대체는 기존의 규칙을 제거하고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며, 전환은 전략적 재배치에 의해 기존의 규칙들이 다르게 실행되는 것이다.(James Mahoney and Kathleen Thelen, "A Theory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in Mahoney, James and Kathleen Thelen eds.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 ambiguity, agency, and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14-17; 최은봉·오승희, 「전후 중일관계의 형성과 변환과정(1952-1972)」, 『일본연구』 제51호, (한국외대일본연구소, 2012.3), p.143)

59) 2.평화 부분의 논의는 졸저, 「권력이론을 통해 본 북미 대결의 전망」, 『사월혁명회보』, (서울: 사월혁명회, 2017.10)일부를 재인용하였다.